## 전 대 차 동 의 서

임대인: 이강훈 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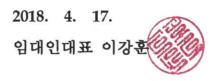
임차인: 가라지 주식회사

임대차목적물: 서울 강남구 선릉로 578, 7층(삼성동, 태정빌딩)

임대인은 다음의 조건으로 전대차에 동의합니다.

## 다음

- 1.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여 전대차한다.
- 2.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반환, 보증금반환 등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.
- 3. 전차인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내용을 준수하며,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이 종료된 경우, 임차인과 전차인의 계약도 종료된 것으로 한다.
- 4. 재 전대차는 금지한다.



- 1. 전대차동의서의 유효기간: 2018년 4월 17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- 2. 전대차동의서 유효기간 내에 작성된 임차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계약은 전대차동의서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전대차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. 전대차동의서의 유효기간은 임대인의 전대차동의에 대한 유효 기간만을 말한다.